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59
----------	-----------

제출연월일	2006. 11.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06.6.23)됨으로 이에 따른 관련조문 및 자구수정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 (옥외광고업 등록필증 재교부) 규정으로 해당조례 삭제 (안 제29조)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 수정 (안 제32조)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33조)

## 3. 참고사항

- 가. 개정근거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06.6.23)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3812('06.6.30)호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9358('06.7.3)호로 표준개정안 시달

나.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6.10.18~2006.11.7)결과 : 의견제출 없음

## 거창군조례 제 호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제1항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별표 4의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한다.

제33조 제1항중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표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과 태 료
2. 법제11조제2항에 다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10만원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30만원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50만원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100만원
마. 1년 이상	200만원

제33조 제1항중 별표 5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9조(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옥외광고업자는 영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2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p> <p>제33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p>	<p>&lt;삭제&gt;</p> <p>제32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p> <p>제33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50%;">위 반 사 항</th> <th style="width: 50%;">과 태 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lt;신설&gt;</p> <p>2.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p> </td> <td></td> </tr> </tbody> </table>	위 반 사 항	과 태 료	<p>&lt;신설&gt;</p> <p>2.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50%;">위 반 사 항</th> <th style="width: 50%;">과 태 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2. 법제11조제2항에 다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가. 30일 미만</p> <p>나.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라.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마. 1년 이상</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right;"> <p>10만원</p> <p>30만원</p> <p>50만원</p> <p>100만원</p> <p>200만원</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3.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p> </td> <td></td> </tr> </tbody> </table>	위 반 사 항	과 태 료	<p>2. 법제11조제2항에 다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가. 30일 미만</p> <p>나.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라.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마. 1년 이상</p>	<p>10만원</p> <p>30만원</p> <p>50만원</p> <p>100만원</p> <p>200만원</p>	<p>3.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p>	
위 반 사 항	과 태 료										
<p>&lt;신설&gt;</p> <p>2.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p>											
위 반 사 항	과 태 료										
<p>2. 법제11조제2항에 다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가. 30일 미만</p> <p>나.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라.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마. 1년 이상</p>	<p>10만원</p> <p>30만원</p> <p>50만원</p> <p>100만원</p> <p>200만원</p>										
<p>3.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p>											
<p>※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p>	<p>※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p>										